



중국, PET 필름 급격히 발전 전자 필름용 PET 필름 수입의존

중국의 PET 필름 제조는 BOPET(雙向拉伸聚脂薄膜) 위주로 1980년대부터 시작됐으며, 당시 생산라인 1대의 생산능력은 3천톤에 불과, 90년대 초 전체 중국의 연간 생산능력은 3만톤에 불과했다. 이 기간 중에는 생산기술, 제품품질, 시장수요의 제한으로 PET 필름 제조에 큰 발전이 없었다.

1990년대 중반 PET 필름이 광범위하게 응용, 특히 복합포장에 많이 사용되면서 1996~97년 佛山鴻基·山東富維·寧波五州·上海紫東 등 기업들이 1만톤/년 생산라인을 잇따라 도입해 중국 총생산능력은 10만

톤/년을 넘어섰으며, 주요 제조업체는 18개사 정도에 달한다.

1997~99년 기간에는 수입제품이 중국시장에 진출하면서 중국 로컬업체들이 타격을 받았고 2000년에 들어서면서 중국 정부의 반덤핑조치와 시장수요 증가에 따라 로컬업체들이 다시 살아났다.

2003~05년간 중국 전역에서 총 24개의 생산라인을 도입해 2004년 하반기부터 PET 필름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2006년 BOPET 필름 생산능력은 56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재 중국의 PET 필름 산업은 급속한 발전을 거듭해 중국은 PET 생산대국이 됐으나 중국과 선진국간 생산구조에는 여전히 격차가

존재한다. 대부분의 로컬업체는 전통적인 제품만 생산가능하며 첨단기술이 필요한 제품(전자분야용 필름)은 여전히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 PET 필름의 수요 동향을 살펴보면, 먼저 2003~10년 중국의 PET 필름 소비시장은 연 평균 15~16%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2005년 PET 필름 소비 수준은 평균 2백45g/인, 수요량은 23만톤에 달했다.

최근 3년간 총 수입액은 평균 49.4% 성장율을 보이고 있으며, 2005년 총 수입액은 4억54만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6.4% 증가했다. 주요 수입국은 일본·대만·한국·미국 등으로 나타났으며, 상위 4대 수입국의 수입액이 전체 수입금액의 80%를 점유하고 있다.

2005년 대 한국 수입금액은 4천2백65만달러로 증가율은 16.7%이다.

중국 지역별 수입금액을 보면 2005년 기준 강소, 광둥, 상해가 총 수입액의 85% 점유하고 있다. 2005년 산둥성 수입금액은 1천5백19만 달러로 동기 대비 66.9% 증가했다.

2005년 강소성은 가공무역 방식으로 4천7백85톤의 PET 필름을 수입했으며, 이는 동기대비 1.2배 증가한 수치로 전체 수입량의 70.6%를 점유했다.

최근 3년간 총 수출액은 평균 66.5% 성장율을 보이고 있으며, 2005년 총 수출액은 1억1천6백17만달러로 동기대비 89.3% 증가했다. 미국은 제1위 수출대상국으로 전체 수출액의 32.3%를 차지했다.

주요 수출국은 미국·홍콩·일본 등에 나타

났으며, 2005년 기준 3개국에 대한 수출금액은 전체 금액의 65%를 점유하며 한국 수출은 6백25만달러로 동기대비 2천85.9% 증가했다.

지역별 수출량을 보면 2005년 기준 광둥, 상해, 절강이 총 수출액의 85.3% 점유했다.

산둥성의 수출금액은 6백24만달러로 동기 대비 1백39%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총 수입액은 평균 20.1% 성장율을 보이고 있으며, 2005년 총 수입액은 9천5백12만달러로 동기대비 0.1% 증가했다.

주요 수입국은 일본·대만·한국 등으로 나타났으며, 3개국 수입액이 전체 수입금액의 78.5%를 점유하고 있으며 2005년 한국 수입금액은 1천3백20만달러로 증가율은 18.8%이다.

지역별 수입금액을 보면 2005년 기준 광둥(廣東), 강소(江蘇), 북경(北京)이 총 수입액의 89.5%를 점유하고 있으며 2005년 산둥성 수입금액은 3백54만달러로 동기 대비 71.2%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총 수출액은 평균 29% 성장율을 보이고 있으며, 2005년 총 수출액은 1천5백51만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38.7% 증가했으며 홍콩 지역은 제1위 수출국으로 전체 수출액의 64.8%를 차지했다.

주요 수출국은 홍콩·일본·미국 등으로 나타났으며, 2005년 기준 3개국에 대한 수출금액은 전체 금액의 84.2%를 점유했고, 한국 수출은 85만달러로 동기대비 7백98.1% 증가했다.



지역별 수출량을 보면 2005년 기준 광둥(廣東), 상해(上海), 복건(福建)이 총 수출액의 88% 점유했으며 산둥성의 수출금액은 39만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0.2% 감소했다.

인도네시아, Acacia 펄프 생산증가 펄프 공급 여유

Asia Pacific Resources International(이하 APRIL)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에 위치한 연산 2백만톤의 펄프 생산설비에서 Acacia 펄프의 생산을 증가시켰다.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가 Acacia 펄프생산 증량에 대해 승인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회사 관계자는 BHK 펄프 생산라인에서 가동률을 최대로 하여 생산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APRIL에서 생산된 Acacia 펄프 중 일부는 Kerinci에 위치한 연산 80만톤의 백상지 생산원료로 쓰이고, 대부분은 아시아 펄프시장에 공급되는데 최근 BHK 공급에 큰 차질을 빚고 있는 아시아 종이 생산업체들은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됐다.

APRIL은 경찰청이 활엽수림의 벌채를 금지시킨 이후 BHK 생산이 중단된 상태이다. BHK 부족으로 생산이 중단되었던 Kerinci 공장도 Acacia 펄프를 사용하며 재가동 했다. 인도네시아 경찰청과 산림청의 대립이 여전히 계속되는 가운데 APRIL의 조림지 조성에 대한 계획도 전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현재 연간 2백만톤의 BHK를 생산하

고 있지만 공급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림지 조성이 필수적이며, Acacia 펄프 생산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어 4분기 내에는 펄프 공급에 다소 여유가 생길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럽, 스낵 영양표시 구체화 움직임 EU보다 엄격한 독일 규정 도입 주장

유럽에서 스낵의 영양성분표시 내용이 강화되고 있다.

독일의 식품, 농업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연방 의원은 이번 주 '영양과 건강에 관한 교육과 정보' 계획의 일환으로 새로운 식품 라벨 규정을 발표했다. 비만과 전쟁 중인 독일에서 소비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 라벨 규정은 EU의 규정보다도 더 강화된 수준이다.

이 새로운 규정은 "1 플러스 4" 규칙으로 2006년 발표된 CIAA안과 부합한다.

"1 플러스 4"란, 열량 정보와 함께 지방, 설탕, 지방산, 소금의 함량을 일일 권장 소비량(Guideline Daily Amounts, GDA)과 비교해 표시하는 것이다.

독일은 영국에 뒤이은 유럽 제2의 짹짹한 스낵 시장으로 그 규모가 16억유로에 달한다. 이번 결정은 여러 이해 집단과의 공청회를 통해 확정, 발표될 것이다. 독일 영양 사회는 GDA 라벨이 소비자에게 영양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하며, 소비자가 자신과 가족을 위해 적절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지지하고 있다. 유럽 스

내 연합회는 이와 같은 규정이 EU전체에 적용 되어야 한다며, 독일의 움직임을 환영하고 있다.

EU, GMO 곡물 판매 승인 사탕수수·밀 등 4종 10년간 반입 가능

EU가 유전자 변형 곡물의 판매를 승인할 방침이다. EU는 4가지 유전자 조작(genetically modified, GMO) 곡물의 판매를 승인할 방침으로 이번 승인으로 27개 회원국내에서 앞으로 10년간 GMP곡물의 판매가 가능해진다. 이번에 승인되는 4가지 곡물에는 1종의 사탕수수와 3종의 밀류이며, 밀류 중 두가지는 여러 종이 합성된 하이브리드이다.

이번 결정은 EU 회원국의 정부관료들이 3개월의 시한 동안 합의점에 이르지 못해 EU 집행부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지난 9월 EU의 투표에서는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었다.

첫번째 GMO 곡물의 상업명은 Herculex RW (코드명: 59122)로 알려졌으며, 이는 듀폰(DuPont)사와 다우 농업 과학(Dow Agro Sciences)사에 의해 개발된 것이다. 뿌리벌레의 유충으로부터 수확량과 영양성분의 감소를 막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 제초제에도 내성이 있다. 여러 종이 합성된 하이브리드는 미국의 바이오테크 회사인 Monsanto가 개발한 것으로 특정 해충에 강하며, 역시 제초제에 강하게 만들어 졌다.

1998년 GMO를 승인한 이후 EU는 투표에서 번번이 승인을 거부해, 사실상 EU는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새로운 GMO 승인을 하지 않았었다.

이후 몇몇 GMO에 관한 결정은 환경단체들의 반

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유럽의 소비자들은 GMO 식품들의 안정성에 대해 걱정하고 있지만, 바이오테크 회사들은 일반적으로 소비하는데 안전하며 비 GMO 곡물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中, 식품 표시관리규정 내년 시행 명칭·생산자·함량·품질등급 등 기재

중국 정부가 '식품표시관리규정(食品標識管理規定)' (이하 규정)을 내년 9월 1일 부터 시행함에 따라 중국내 생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및 공장들은 식품 표시에 대한 철저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이 규정은 중국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國家質量監督檢驗檢疫總局)에 의해 지난 8월 27일 '식품표시관리규정(食品標識管理規定)' (이하 규정)을 공표됐으며 식품표시의 감독관리 강화, 식품표시의 규범화, 품질 속임의 방지, 기업과 소비자의 합법적 권리 보호를 제정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규정에서는 중국 국경 내 생산, 판매되는 식품의 표시와 관리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수출, 수입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수출·수입의 식품표시의 관리는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國家質量監督檢驗檢疫總局)의 관련 규정에 의해 출입국검험검역기구(出入境檢驗檢疫機構)가 집행한다.

또한 '식품표시'를 식품의 명칭, 품질등급, 상품양, 식용 혹은 사용방법, 생산자 혹은 판매자 등의 상관 내용을 문자, 부호, 숫자, 도안 등으로 표현해 식품 혹은 포장에 붙이거나 인쇄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관리 감독은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 직권 범위 안에서 전국 국가식품표시의 감독·관리를 책임지며, 현급 이상의 지방 질량 기술감독 부문이 직권 범위 안에서 해당 행정구역 내의 식품표시의 감독, 관리를 책임지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식품표시에는 식품 명칭·생산지·생산자의 명칭 및 주소·생산 날짜·품질 보증 기한·정합량·성분 및 정량 표시·품질 등급·생산 허가증 등을 기재해야 한다.

이 가운데 식품 라벨에 중문(中文) 설명이 기재돼야 하는 식품으로는 △ 특정 집단에 대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의학, 임상적으로 증명된 식품 △ 전리방사 처리된 식품(방사선 조사 식품) △ 유전자 변형 식품 혹은 유전자 변형된 재료가 사용된 식품 △ 법률·법규·국가 표준 등의 규정에 의해 반드시 설명을 표기해야 하는 기타 식품 등이다.

그리고 식품표시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내용으로는 △ 질병 예방, 치료 작용의 내용에 대한 명시 또는 암시 △ 비 건강식품에 대한 건강작용의 내용의 명시 또는 암시 △ 식품에 대한 사기성 또는 오해를 일으킬 만한 방식의 소개, 묘사 △ 근거 없는 부가적 상품의 설명 △ 문자 혹은 도안이 민족풍습을 존중하지 않거나 무시하는 하는 식의 묘사 △ 국기, 국회 혹은 인민폐 등을 사용한 표시 △ 다른 법률, 법규 혹은 표준이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 등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알콜 함량이 10% 이상의 주류음료, 식초, 소금, 고체류 설탕은 품질보증기한(保質期) 생략이 가능하다.

위탁받아 생산 가공하는 식품은 위탁한 기업의 명칭, 주소로 표시해야 하며 위탁한 기업이 위탁 가공의 식품생산 허가증을 가지고 있을 시, 위탁 기업의 명칭, 주소와 생산 기업의 명칭을 동시에 기재하거나 위탁 기업의 명칭과 주소만 기재해도 된다.

식품의 명칭 혹은 설명 중 영양(營養), 강화(強化)라는 말이 있을 경우, 국가표준관련 규정에 의해 국가표준규정의 정량 표시에 부합하는 그 식품의 영양소와 열량을 표시해야 하는데 위반할 시에는 일정 기한 내 시정해야 하며 시정하지 않았을 시 5천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된다.

그리고 식품 혹은 포장 상에 식품 관련 내용을 기재하지 않을 시 일정한 기한 내 시정해야 하며, 1만위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이 규정 실시에 따라 식품라벨위법행위규정조사(查處食品標籤爲法行爲規定)는 폐지되지만 '포장식품라벨통칙(豫包裝食品標籤通則)'은 폐지되지 않는다.

본 규정은 벌금 및 법률 책임에 관한 규정이 늘어난 포장식품라벨통칙의 보충이라 할 수 있다.

이번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상품질량법(中華人民共和國產品質量法)', '중화인민공화국식품위생법(中華人民共和國食品衛生法)', 국무원 식품등제품안전감독관리관련 특별규정(國務院關於加強食品等產品安全監督管理的特別規定) 및 '중화인민공화국공업제품생산허가증관리조례(中華人民共和國工業產品生產許可證管理條例)'에 의거해 제정됐으며 총 5장 42조로, 총칙, 식품표시의 내용·식품표시의 형식·법률 책임·부칙 등을 포함하고 있다. ㉠